

관리번호	
비치부서	인사지원팀

에어부산 윤리강령



에어부산 (주)

개정 기록표
(Services Record of Revisions)

개정 번호 Rev. NBR	개정 일자 Rev. Date	개정본 철입 일자 Rev. Insert Date	개정본 철입자 Rev. Inserted By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INTENTIONALLY
BLANK**

목 차

전 문	1
제 1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1.1 주주의 권익보호	1
1.2 평등한 대우	1
1.3 적극적 정보 제공	1
제 2장 고객에 대한 자세	2
2.1 고객존중	2
2.2 고객보호	2
제 3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2
3.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2
3.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2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3
4.1 공정한 대우	3
4.2 근무환경 조성	3
제 5장 사회에 대한 책임	3
5.1 국내외 법규의 준수	3

5.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3
5.3 환경보호 -----	4
제 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4
6.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6.2 이해상충행위 금지 -----	4
6.3 내부정보 금지-----	4
6.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5
6.5 성희롱 방지 -----	5
6.6 정치관여 금지-----	5
6.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5
6.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6
6.9 윤리강령의 준수 -----	6
부 칙 -----	6

전 문

에어부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윤리경영이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확신아래 윤리경영을 4 대 핵심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윤리경영을 추진한다. 지탄을 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고 신뢰받는 기업,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 1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1.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자세

2.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운항과 고객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 3 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3.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4.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4.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5 장 사회에 대한 책임

5.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2 지역사회 및 글로벌사회 공헌

- 회사는 지역항공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3 환경보호

- 회사는 환경안전경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추구한다.
- 회사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제 6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6.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6.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6.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6.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6.5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6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6.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6.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위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다른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9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부 칙

1. 회사는 본 강령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2. 본 강령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